

의안번호 제182호

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박승용 의원 외 7명
발의연윌일	2019. 11. 15.

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호 제182호

발의연월일: 2019. 11. 15.

대표발의자 : 박승용

공동발의자: 김만중 조배식

서 원 조용훈

최정숙 박영자

차경선

1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교육 및 결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홍보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

기본법」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조례안 : 별첨

2) 예고기간 : 2019. 11. 15. ~ 2019. 11. 20.(6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방연마스크"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플래시 오버"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.
- 제3조(설치)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청사(시청사, 보건소,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)
 - 2. 각급 학교(초등학교, 중·고등학교, 대학교)
 - 3. 복지시설(사회복지관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, 여성복지시설 등)
 - 4. 영유아 보육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)
 - 5. 공공기관(우체국, 도서관, 문화관 등)
 - 6. 다중이용시설(백화점, 대형마트, 공연장, 기차역, 공원, 숙박시설 등)
 - 7. 의료기관(종합병원, 개인병원, 요양병원, 요양원 등)
 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- 제4조(교육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결연지원)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홍보)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실천·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7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박승용 의원 외 7명

참고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